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료실습교육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76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형동 의원 등 25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0.
3. 회부연월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설립) ①·② (생략) <신설>	제5조(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관련대학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u>

현재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적으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지난 21대 국회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은 총 8건으로 다음과 같음.

< 21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희재 의원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최형두 의원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영희 의원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혜영 의원

22대 국회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¹⁾,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²⁾,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⁴⁾이 상정되어 있음.

현행법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에 대학병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⁵⁾ 이에 따라 현재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모든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이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 중 일부는 그 지역에 이미 의료실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1) 의안번호 제2200279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2200474호,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3) 의안번호 제2201062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4) 의안번호 제2202120호,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인천지역의 경우 이미 3개의 상급종합병원⁶⁾이 소재해 있음. 이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학병원을 추가로 두게 된다면, 그 지역 내의 상급종합병원이 과잉될 우려가 있음.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두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천의료원을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그 외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도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둘 때, 그 지역에 의료실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대학병원 설립 없이 의과대학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과대학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관련대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제1항은 관련대학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바, 조문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⁷⁾

교육부는 현행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

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7) <수정안> 제5조(설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관련대학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와 임상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치에 의학 교육·연구의 질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으며, 위탁교육을 통한 의료실습 등 교육과정의 운영은 이동 거리, 수탁병원의 교육·실습 여건 등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충분한 교육 인프라 없이 설립된 의과대학의 교육은 부실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임상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근거나 내용이 부재하다는 입장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위탁교육은 의료실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각 의과대학별로 대학병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해당 병원에서 의료실습교육 등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